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2월 17일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표창 규정 및 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07 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일

발의자 : 최봉희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등포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